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1편 특허법 13~13p 번호 : 03	문제-보기(지문)	ㄱ. “실시”란 ‘물건의 발명’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)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	ㄱ. "실시"란 '물건의 발명'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)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
제2편 상표법 55~55p 번호 : 02	문제-본문	③ (○) 상표법 제107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‘ 침해행위 당시 ’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判例 2006다22722).	③ (○) 상표법 제107조(구 상표법 제65조)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'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'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, 상표법 제109조(구 상표법 제67조)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' 침해행위 당시 '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判例 2006다22043 참조).
		수정 사유	해설 내용 오류
디자인보호법 158p 번호 : 44	문제-보기(지문)	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)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.	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)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.
		수정 사유	문제-보기(지문)_오류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